

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(쉼터)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(상담센터)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4층
(쉼터) 성북구 ※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
- 시설규모 : (상담센터) 60.19㎡, (쉼터) 137.26㎡
- 주요시설 : (상담센터) 사무실, 상담실2, 창고
(쉼터) 총 2개호 / 각 호별(68.63㎡) - 방3, 거실, 주방, 화장실
- 인력운영 : 12명(센터장 1, 회계·행정1, 센터 상담원 6, 쉼터 상담원 4)
※ 운영시간 : 평일 9~18시 / 상시 상담언어 : 6개(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몽골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1. 1. 1.~ 2023.12.31.)
- 위탁업무
 -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일체
 - 전문상담(전화/온라인/대면/현장방문) 및 의료·법률·심리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업
 - 센터 산하 ‘한울타리 쉼터’ 관리·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
 - 의식주 생활서비스,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- 소요예산 : 691,706천원('21년도)
 - 인건비 487,506천원, 사업비 165,981천원, 운영비 등 38,219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 - ※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0.7.8.)

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와 연계한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서,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(외국인다문화담당관-7174, 2020.6.16.)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임선희 (☎ 2133-5078)